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처벌강화〉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04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처벌 강화	2
2. 부칙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현회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30.
3. 회부연월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적발된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1,083건에 달함. 그런데 실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처벌강화

개정안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처벌시 징역형은 6개월 이상, 벌금형은 500만원 이상 부과하도록 하한 기준을 신설하고, 형 확정 후 5년 내 재범시에는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함(제53조의3 신설 등).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53조의2(벌칙)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삭제>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신설>	제53조의3(벌칙) ①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현행	개정안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현행법은 수출입물품등 및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해 원산지 허위·오인 표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표 2]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규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1. <u>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u>하거나 원산지를 <u>오인(誤認)</u>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u>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u>하는 행위 3. <u>원산지표시대상물품</u>*에 대하여 <u>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u> *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33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u>규정에 위반</u>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u>국내에서 거래</u>하는 행위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③ <u>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u>에 대해서는 <u>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u>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

그런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위반행위 처벌시 하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범시 2배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형법」 제35조²⁾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이를 다시 범한 경우에 대해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 및 징역형 하한에 대해서는 가중되지 않음.

[표 3] 형법 및 개정안에 따른 누범·재범 규정 비교

구 분		「형법」 상 누범	개정안 재범
가중처벌기간		집행종료·면제후 3년	형확정후 5년
효과	벌금형	-	상·하한 × 2배
	징역형	장기의 2배	

1) [핫이슈] 원산지 표시 위반에도 2년 영업... '숨방망이' 처벌 '눈살', 2023. 1. 31., 페로타임즈
 - 업계에서는 관계부처가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숨방망이 처벌로 인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한 업체가 부당이익 대비 작은 벌금이나 짧은 정지 기간 등 미약한 처벌로 손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어 비슷한 행위 반복 및 여타 업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https://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45>

2)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통상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시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재범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상·하한을 모두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하여야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형량의 하한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행위자의 책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비례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초범 여부 및 부당이득 규모 등 개별 사정을 배제하고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하한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³⁾도 원산지표시 기준 위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제14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반시 처벌하고 있는데, 초범에 대하여는 벌칙의 하한 기준이 없고, 재범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징역(7년→10년) 및 벌금 상한(1억원→1.5억원)은 초범 대비 약 1.5배로 상향하고 있으며,

[표 4] 유사입법례와 벌칙 수준 비교

구 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현행법	개정안
초범	벌금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징역	7년 이하	5년 이하	6개월 이상 ~5년 이하
재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형법」에 따라 가중	1년 이상 ~10년 이하

산업통상부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현황을 비교하면, 공산품의 총 위반금액은 농수산물의 약 4배, 건당 평균 위반금액은 약 60배 수준이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실제 선고되거나 부과된 벌금액은 대략 100만원 내외 수준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4)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 부칙

안 부칙은 동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표 4] 개정안 부칙

개 정 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권리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속히 확립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
이므로 벌칙 강화 필요성·시급성과 아울러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수용성 제고 측면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